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5일, 최민희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1. 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 6.)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 6.)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최민희 의원)

대량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등록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해당 사업자가 난립하여 불법스팸을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심사요건이나 제재기준 등과 관련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1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개정안은 문자재판매사가 방통위로부터 3년 기한인 문자 전송 자격을 인증받도록 하고, 문자재판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자 등록시 전송자격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적인 규제와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 대량문자 발송스팸으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검증된 사업자만 대량문자 전송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며, 전송자격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전송자격 인증 취소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도록 할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문자중계사도 문자재판매업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스팸문자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문자재판매업을 겸하는 문자중계사도 전송자격인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도 개정안 규율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현)

불법스팸 방지를 위해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과기정통부장관 또는 방통위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